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꽃피는 세상



인권교육센터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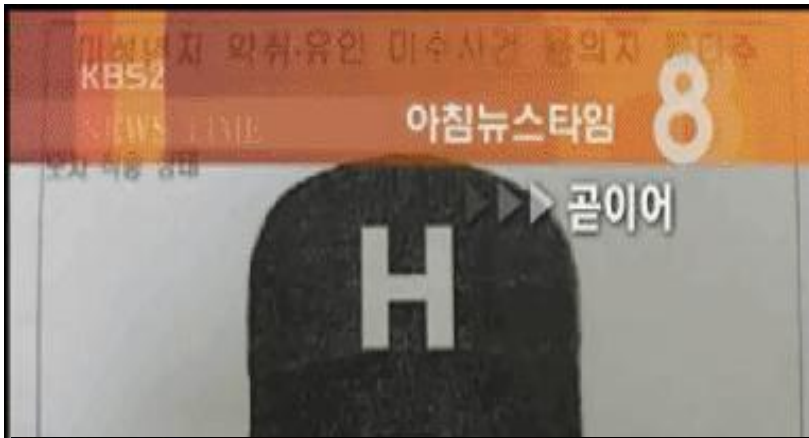


소수자/약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우리 엄마는 집에 있어요. 일 안해요.”



범죄자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주체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청구 및 선고

(단위:건)

연도	청구	선고
2000	258	183
2001	323	176
2002	421	208
2003	433	250
2004	473	274
2005	529	291
2006	663	303
2007	747	334

〈자료:사법연감〉

**장애인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보호'
무능력한 것인가, 무능력해지는 것인가?**





학력이 낮은 자, 그 입 다물라!

어린이/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시민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여 이명박정부 교육을 심판합니다.



6

기호

주경복

시민이 선택한 민주교육감

- 1950년 강원도 원주 출생
- 원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 졸업
-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과정 (1983년~1986년), 언어과학 박사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 교수
- 둔촌중학교 운영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상임대표
- 민주화물위헌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 재경 원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학교법인 지산학원 이사(현)
- 시민방송(RTV) 운영위원(현)

진짜 후보가 여기 왔다!!

7.30 서울교육감 선거

캐발랄 리얼 후보



못 뽑으니까 나와봤대!

이딴 교육 받으면
이명박 된다!

★ 캐발랄한 핵심약속 ★

입시경쟁NO 다양&평등 교육으로~

0교시, 강제야자, 보충수업, 우열반 안됨!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보장!

영어교육정상화. 영어는 하나의 외국어일 뿐!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청소년 참가 Go~

교사소환제, 인권교육 등, 벌보단 소통과 변화

탈학교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http://csn08.tistory.com>

* 실제로 등록된 후보가 아님. 선거법 위반이라고 잡아가지 마셈.

NO.0

청소년이 교육의 주인되는 그날까지!

레알 교육감 후보 청/소/년

Zero

어른들의 짝 막힌 귀를
삽질하라

못 뽑으니까 또 나왔다
청소년이 직접 한다!



청소년에게
교육선거 왜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기호 0번 청소년

입시경쟁, 시험지옥 그만!
두발복장자유, 체벌폐지, 강제야자보충 박멸!
식욕 듣는 학교, 꿈을 꾸는 학교!
빠져도 되지만 빠지기 싫어지는 학교!
차별은 없고 차이는 존중받는 교육으로!
학생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가 아님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가지 마셈!

cafe.naver.com/realcsn

realcsn.fistory.com





헌법 재판소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합헌"

-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노모씨 등 찜질방 업주 5명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에 청소년의 심야출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중략.....

-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해 이 규정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 2008년 1월 17일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무서운 10대들' 청소년 조직 절도 잇따라

[2008-04-24 07:44:56]

성폭력 '불안한 10대 · 무서운 10대'

무서운 10대... '무면허에 대포차까지'

[2008-05-06 14:24:51]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금품갈취에 절도

[2008-08-06 11:07:41]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條例)'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발족한다. 친전교조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시도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했다가 도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보류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개연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초안에는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집회결사의 자유 및 교육 정책 참여권 허용, 정규교과 외(外) 학습 선택권이 들어 있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만 해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생들

에게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좌파 세력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나 학교 운영 참여권, 정규 교과 외 학습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최근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에서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금 후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우

우울하다

금 후
주

주변

후
정

정신

금 후
부

부족하다

금 후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지연이 바뀐다.

청소년 관심사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견해

	 <p>"자유연애 금지"</p>	 <p>"교사도 성교육 받아야"</p>	 <p>"교칙위반 학생 자율규제"</p>
<p>질문</p>	<p>공정택</p>	<p>이인규</p>	<p>주경복</p>
<p>청소년 자유 연애에 대해</p>	<p>학생 신분은 자유연애는 금지</p>	<p>상식 선 넘지 않은 자유 연애 보장</p>	<p>상식 선 넘지 않은 자유 연애 보장</p>



**청소년 인권,
잊혀진 권리를 찾아서**





‘교육적 차별과 폭력은 구분해야’, ‘차별 금지 단계론’의 등장
- ‘여전한’ 여론이 보여주는 학생 인권의 현실



19C 노예 훈련법 5단계

엄격한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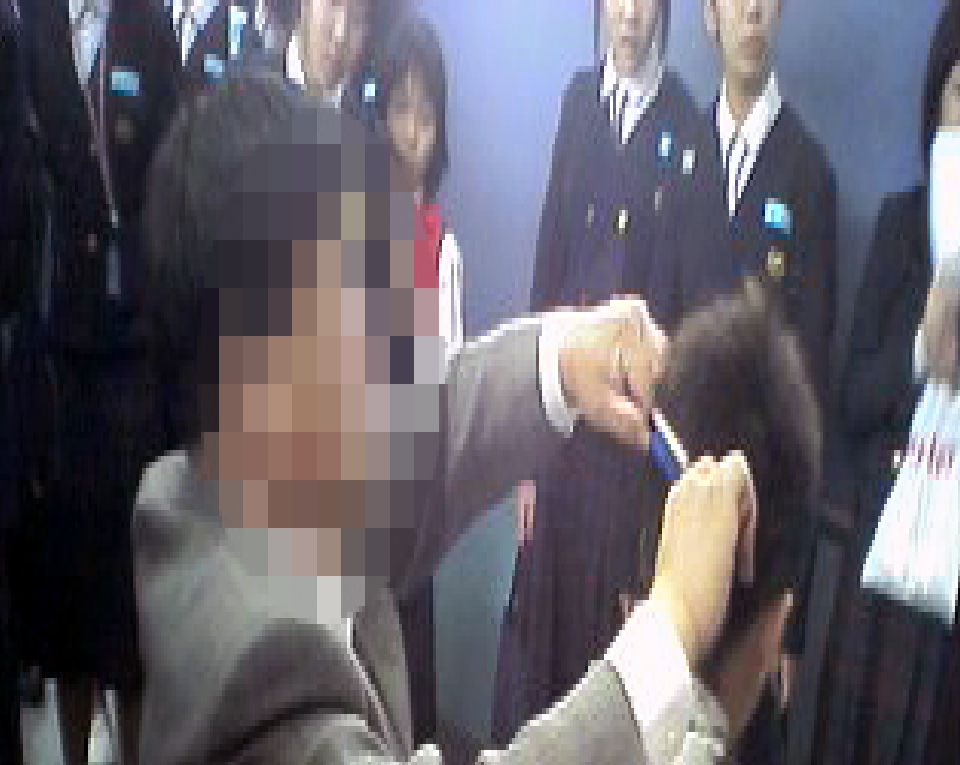
열등성에 대한 자각

주인이 가진 우월한 권력에 대한 믿음

주인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자신의 무력함과 의존성을
벗속 깊이 느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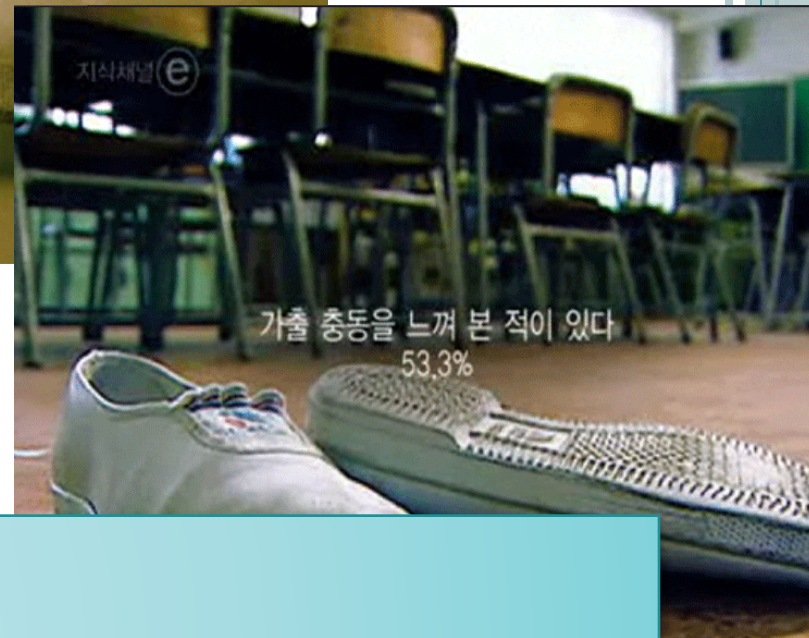




10명 중 7명
'학교 가기 싫다'



지식채널 e
자살 욕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27%



지식채널 e
가출 충동을 느껴 본 적이 있다
53.3%

EBS 지식채널e,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 2008년 학생 137명 자살
- 2004년~2008년 학생 623명 자살, 5년 새 35.6% 증가
- 성적비관 자살은 4.25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09년)
- 청소년 2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시도
 - 질병관리본부 발표(07년)
- 청소년 2명 중 1명꼴 자살 생각, 10명 중 1명꼴 자살 시도
 - 한국청소년상담원(08년9월)
-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
 - 통계청(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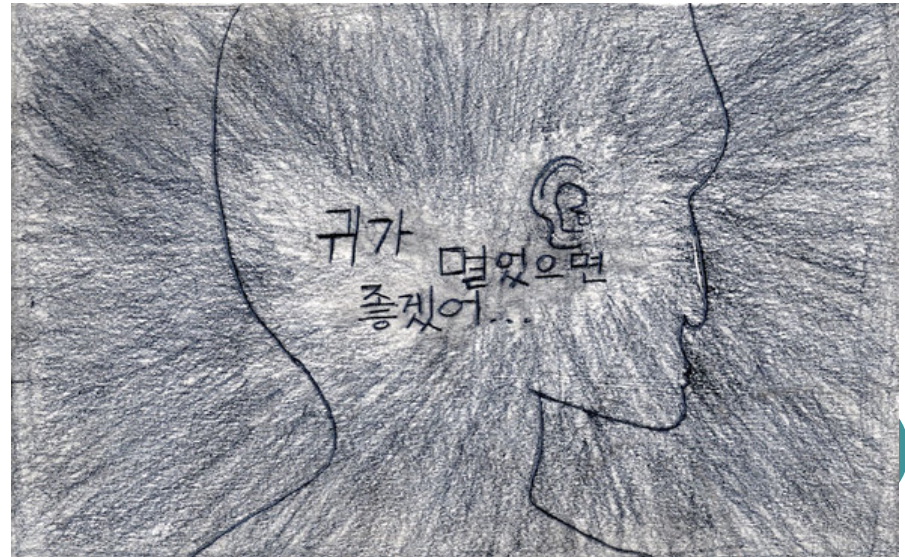
➤ 억압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 뒷담화와 비밀엽서 사이

4.25 등급 자리 '나'

언어 3
수리 4
외국어 4
탐구 5



이 모든것이 다 제 잘못이겠지요?
 멍청한 제겐 한국교육에서의 영원한 '자퇴'가 꿈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1210’를

해기어기공 조우의

112

정신건강 위기

해도 인간

어라

오침들

청소년들이 직접 쓴
최초의 청소년인권 이야기



청소년에 씌워진 '미성년'이란 굴레, 시험성적에 따라 정제되고 분류될
'인적 자원'이라는 규정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인간' 선언
- 청소년 자신의 눈으로, 한국 교육의 현실과 청소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선에 대해 가감없이 통렬하게 고발하고 폭로! 그리고 발랄한 상상력!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
을
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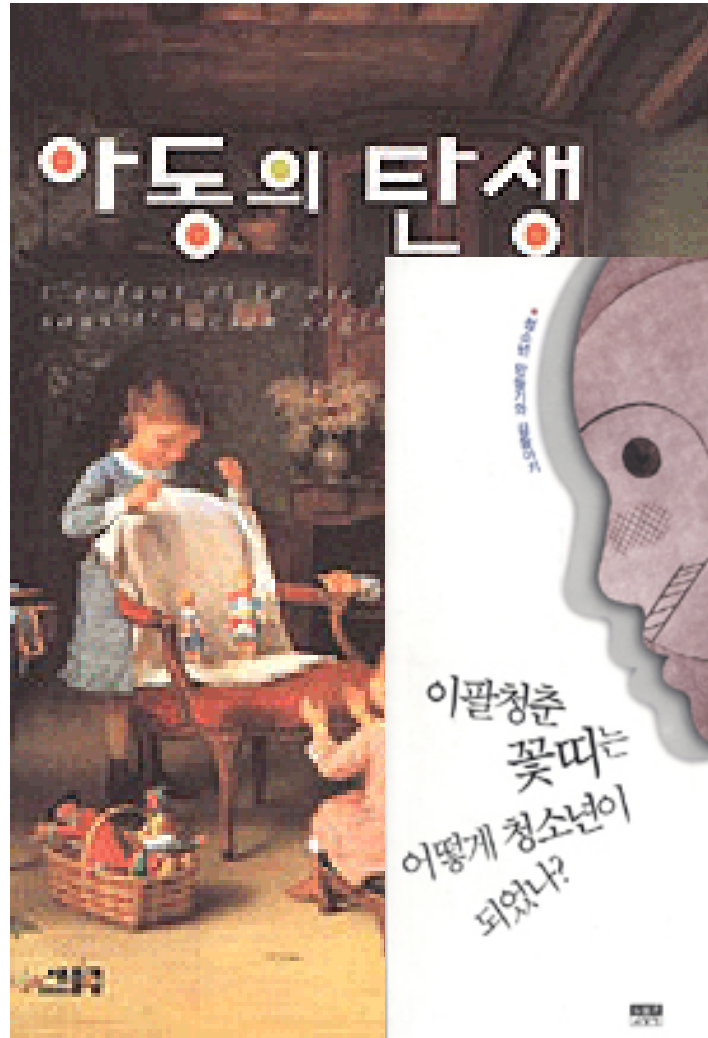
지은이들
공현
김명진
김찬욱
무직인꿈틀이
바람
박승훈
밤의마왕
블랙투(한김중희)
생선
...

2009년 4월 6일 발행 | 332쪽 | 152×210 | 값 12,000원
ISBN 978-89-91402-31-7 03300

경계를
확장하는
일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아동기는
역사적 구성물”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만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은 배우기 힘든 사회





☞ 위험에 빠진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주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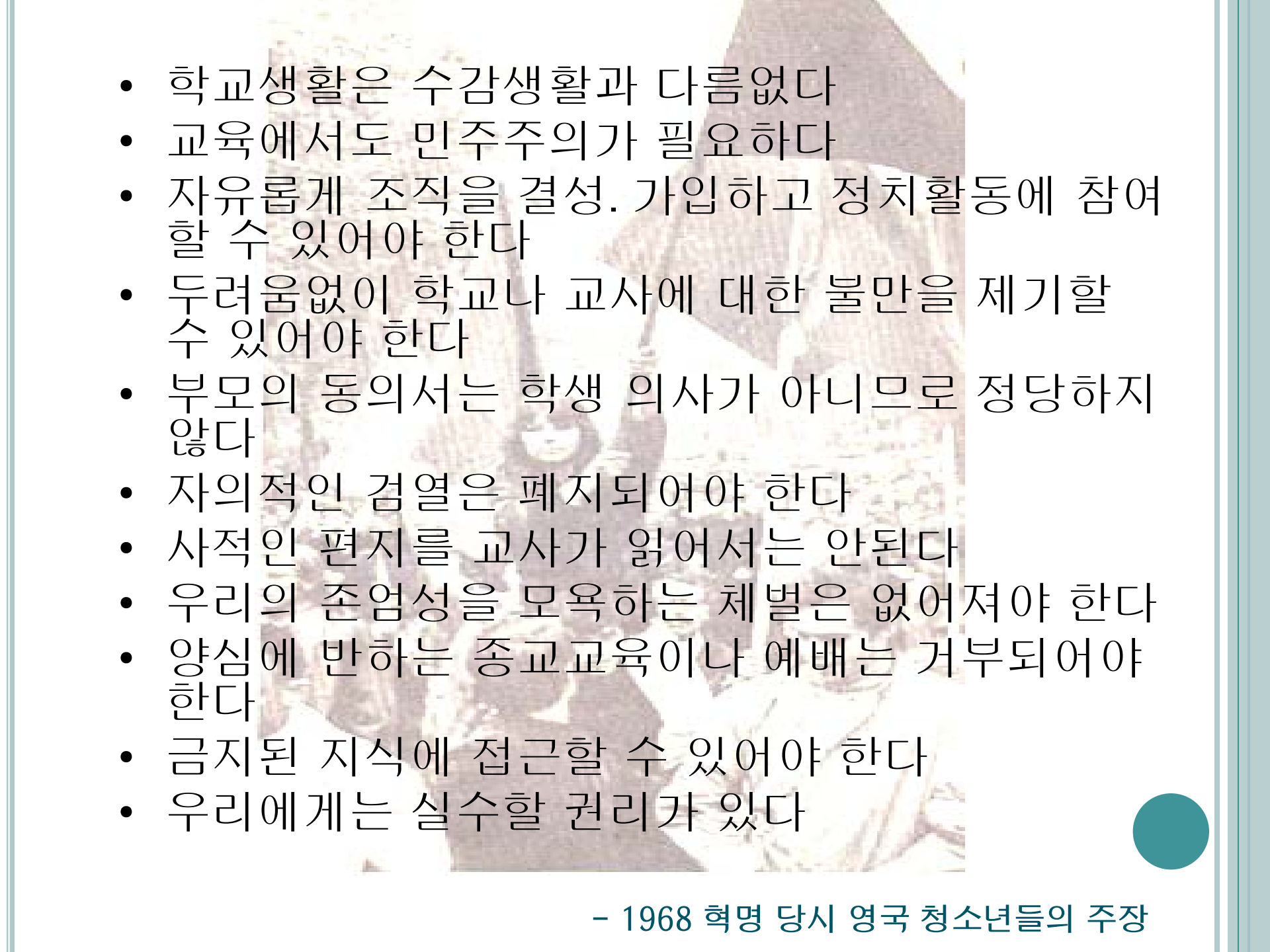
☞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인권관





20세기 중반 프랑스 학교의 풍경

- 
-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 교육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 가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두려움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모의 동의서는 학생 의사가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
 - 자의적인 검열은 폐지되어야 한다
 - 사적인 편지를 교사가 읽어서는 안된다
 - 우리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체벌은 없어야 한다
 -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한다
 - 금지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에게 실수할 권리가 있다

보호라는 이름의 폭력



지적장애를 가진 여아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친척 남성들에 집행유예 선고
=>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1881년 리버풀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식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어머니를 처벌한 법은 19세기 초에 제정된 ‘동물학대금지법’이었다.”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영화 <반두비>,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무엇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무상급식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
서 청소년 문화를 통제하는 건 부당
해. 사전심의, 나이제한도 없어야
야 해~

가출은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
소년들이 원한다면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담배나 술 등의 기호 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금지해서는 안
돼.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시
험거부, 등교거부나 가출 등의 파업
행위를 하는 건 모두 우리의 권리야.

감시카메라로 청소년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안
전을 핑계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야!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집회를 했
다는 이유로 벌이익을 받아선 안돼.

2008 청소년 인권 선언 중





東亞日報

서울 22~29℃ 경기 21~30℃ ▶새벽 4시
1920년 4월 1일 창간 제7963호 45면

donga.com

“성취도-교원평가 반대” 중고생 단체가 홍보전

‘아수나로’ 9일 거리집회 예정 - “소극적인 전교조 독재”

김포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학생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반대 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고교생이 주축이 된 청소년 단체가 이 운동의 전방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는 9일 서울 청계천에서 ‘일제고사 거부와 교원평가 반발’을 위한 거리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교육학부모회와 한국교육연동조직을 회원들과 함께 학생성취도평가 전담인 12일까지 서울지역 학교와 지하철 등을 돌며 ‘일제고사 반대’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성취도평가 달 일인 19일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일제고사 교원평가 경원교육 폐지’를 주제로 순회제행 연다. 아수나로는 최근 서울지부 회의

에서 “전교조가 요새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참학(참교육학부모회)도 재노면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9일 집회와 관련해 전교조에 분서행 보내 알라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왜냐하면 아수나로 회원들이 (일제고사 거부) 저항학숨에 참여하는 것처럼 알리고 당당하게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해야 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김포 상당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전교조가 ‘일단 교육감을 지켜보자’는 태도인데 반해 청소년 단체는 전교조를 암묵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결성된 아수나로는 총

아수나로 최근 주요 활동 내용

- 2009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기해단 참여
- 무당 지방, 지방 제2차 등
- 11월 ‘학생인권 1대 10만인명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 12월 일제고사 반대 전국집회 진행에 인권연대 제출
- 2010년 일제고사 반대 제1차집회 소환, 3월 일제고사 반대 제2차집회 활동 참가
- 4월 서울시교육청 민주성보 인성교육추진위원회 참가
- 교육감 재보후보 초청
- 10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헌장 채택까지 개최

교보생이 중심이 된 학생인권운동단이다. 방문처 가지 www.donga.com 해나 가지 www.donga.com

32면 ‘아수나로’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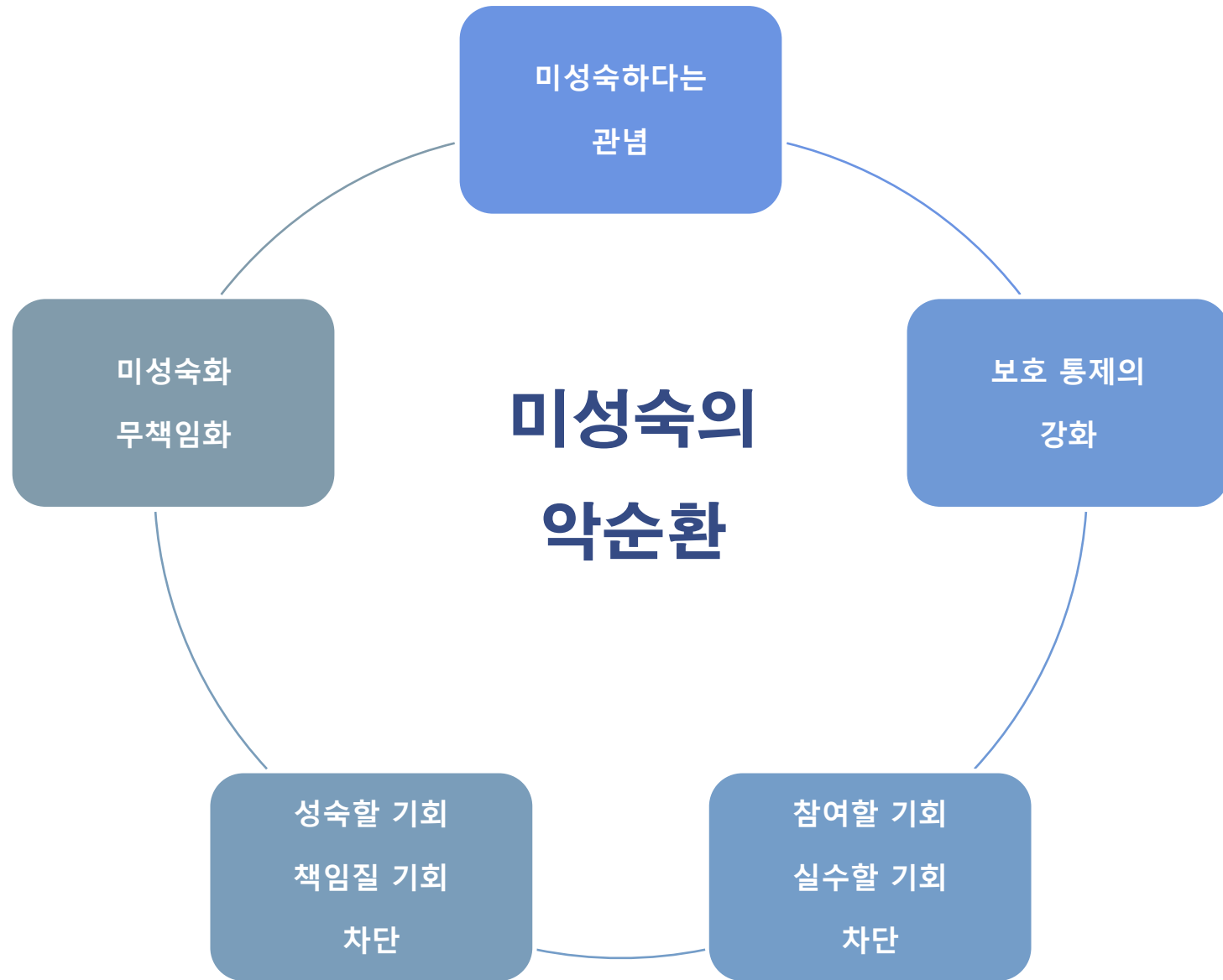
버스에 뿔긴 가드레일- 가슴 뿔긴 유족들 교복스 주막사교 교 앞이 파손된 도로사설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청취회 구거간 가드레일을 통해 사

청소년 ‘인종주의’에 대한 반격

“우리의 운동은 당신들의 정략보다 성숙하다.”



어린이, 청소년은 미성숙한가, 미성숙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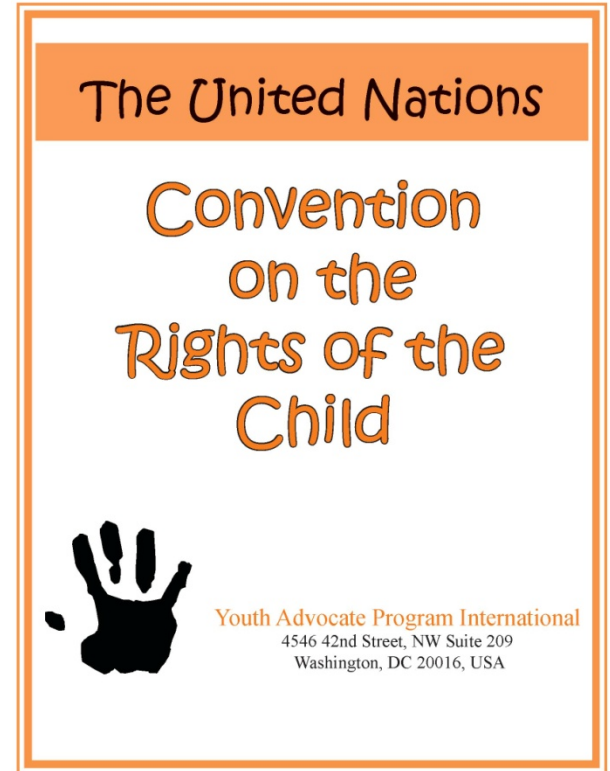
- ☞ 어린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 돌봄은 참여와 자기결정과 동행해야 한다

- 20세기 후반기의 아동인권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일반원칙(4P)

: 1989년 유엔총회 채택, 1991년 한국정부 가입 비준

- Protection(보호)
: 18세 미만 아동 누구도 차별 없이
- Prevention(예방)
: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 Provision(제공)
: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보장
- Participation(참여)
: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할 권리
: 그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부끄러운 한국교육

: 1996년, 2003년 두 차례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주요 초·중등 교육정책 변화

항목	내용
영어 공교육 혁신	초3~6학년 정규 영어수업 확대, 재량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학습 확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추진 및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강화
	영어몰입교육 보류, 단 서울 1개 초등학교 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국제중학교 설립	내년 3월 영훈, 대원중 국제중으로 전환
	1단계 학생부 중심 5배수 선발, 2단계 토론 중심 3배수 선발, 3단계 추첨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2011년까지 농산어촌 지역 우수고를 중심으로 기숙형공립고 150개 지정, 지역 거점학교로 육성(올해 82개), 교원채용, 학사운영 등 자율화
	2012년까지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도입
	2011년까지 미래형 직업전문고, 마이스터고교 50개 운영(올해 20개 지정)
고교선택제 실시	현재 서울 중2년생 2010년부터 최대 4개교까지 지원가능
	1단계 서울 전체 고교중 2곳 지원, 2단계 거주지 학교 2곳 지원, 3단계 인근학교 강제배정
학교자율화 추진	교과부 '0교시 수업',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고교 시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후 학교, 사교육업체 운영가능
	서울시교육청, 이기운데 '0교시 수업', 우열반은 금지
일제고사 부활	올해부터 초6, 중3, 고1 대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전국학력평가 실시
	2010년 시험부터 학교별 성적 3등급으로 나눠 공개
대입 3단계 자율화	2012학년도(현재 중3 적용)부터 수능 응시과목 축소 및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 무책임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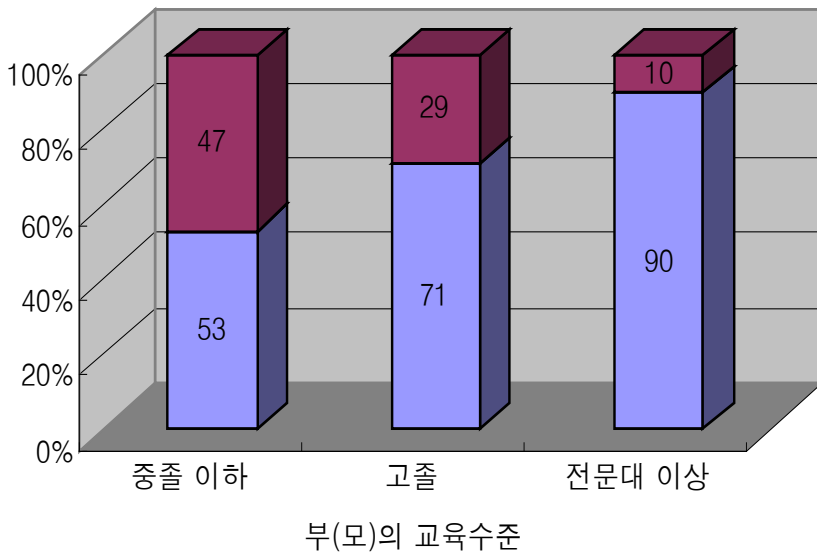


■ 늘어나는 학생간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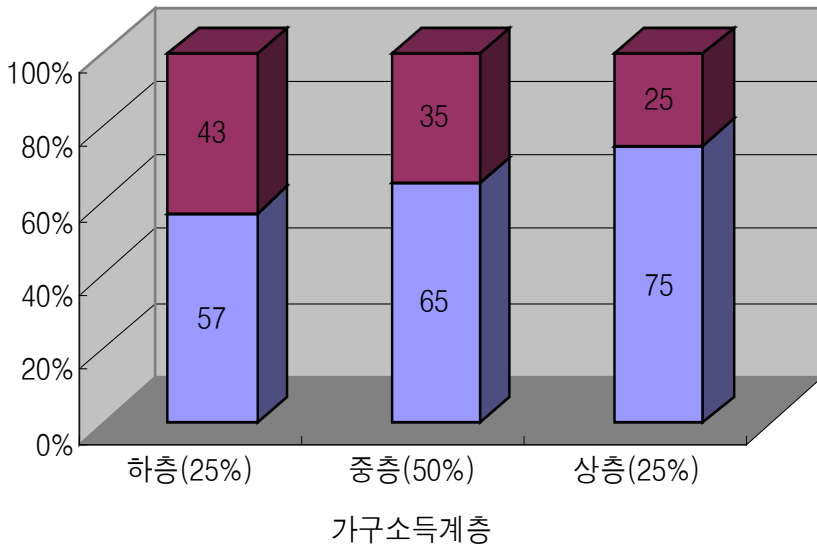
☞ 분출구를 찾지 못한 스트레스와 분노

■ 학생회장 선배가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08년 강릉)

☞ 유일하게 알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폭력



■ 일반계 진학 ■ 실업계 진학



■ 일반계 진학 ■ 실업계 진학

고등학생 학업중단 추이

※ 학업중단자는 기사·품행·부적응에 의한 경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나?



법과 규칙이 살아
있는 학교를 만들
겠습니다.



체벌에서 벌점으로
법과 규칙만 살아남는 학교

어떻게 청소년을
조장할 것인가



➤ '학생인권 존중'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새로운 학교의 전망을 열기 위하여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쇠말은 무엇일까요?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中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

: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 성장이란 민주화와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 학습 과정이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70-71항

4. 감당할 만한 교육

: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념하는 것이다.



“학교는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자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임,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

-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26항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 학생의 모든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 물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자유의 행사도 가능해진다. 또한,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건강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 달려있다.”

-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23항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 학생 권리의 이행에는 학생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폐쇄공간이 아니라, '마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 보장은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 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채택,
다카르(Dakar) 행동계획 69-70항

10.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 인권이 의미 있으려면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권리 회복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 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 (아동 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01-10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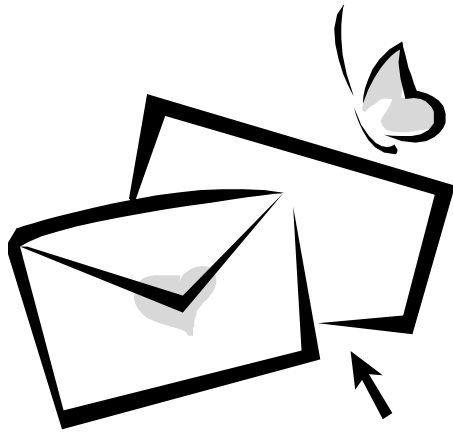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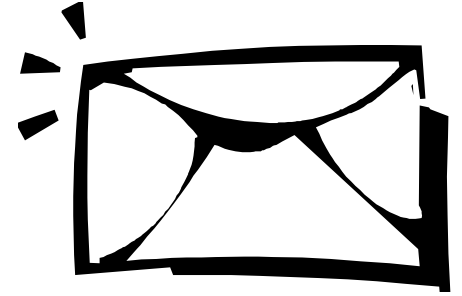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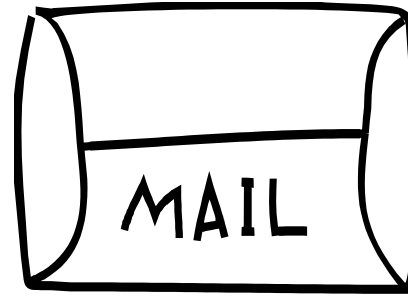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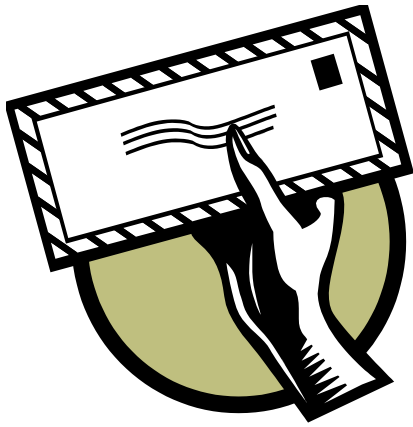
학교에서 ‘학생인권’으로 살아남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1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교사 ○○이라고 합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몇몇 교육청에서 시작되자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핫 이슈는 단연 두발자유입니다. 학생들은 정말 두발 자유가 바로 시작되는 거냐고 묻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두발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두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단위 학교들의 상황이 다르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무작정 두발 자유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편지 2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2학기부터 바로 교칙에서 체벌 규정이 삭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된 체벌이 여전히 학교에는 존재했던 거고, 체벌은 100대가 아니라 단 한 대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 사라지면 학교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생활 평점제(상벌점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만적인 체벌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활 평점제가 훨씬 인권적인 지도 방식 아닐까요?

편지 3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권의 경계에서 고개를 가웃거리고 있는 교사 □□입니다. 작년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조례 초안을 본 적이 있어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학생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물론 강요된 반성문을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급 동료를 때리고도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웃고 있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강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일방적으로 꾸짖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 했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이 왜 반인권적인 교육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성문은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적 행위 아닐까요?

편지 4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교사 ◇◇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학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올 때, 휴대전화를 꺼두고 하교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내에 공중전화를 많이 설치하고, 급한 용무가 있을 때 교무실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가끔 휴대전화 벨이 울려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이용 구역을 제한하는 방법, 수업시간에만 꺼두게 하는 방법,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쉬는 시간에 쓰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가장 인권적인 방식일까요?

편지 5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 □□이라고 합니다. 학교 안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학내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꼭두각시’ 학생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할 텐데, 저의 고민은 학생회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입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기도 한데, 이를 복돋기 위해서는 지도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회의 소집권 및 안건 결정권, 운영회의 참관 및 의사 결정권, 학교 예/결산 결정권 및 집행권 등 여러 권한들이 떠오르는데 이 모든 권한들을 한꺼번에 부여하기에는 학교도 학생들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학생회의 권한 강화를 이뤄내야 할까요? 지도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